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6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임미애 · 권철승 · 김원이
문대림 · 송옥주 · 윤준병
이용우 · 이원택 · 임호선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낙시 인구는 1천만 명에 달하는 수준으로, 대한장애인낙시연맹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 낙시인이 약 29만 명으로 추산되어 전체 낙시인구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낙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낙시 참여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 낙시인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한 관련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낙시진흥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련 산업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제5호 신설 등).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5조제1항 중 “조성 및”을 “조성,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낙시진흥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u>5. (생 략)</u> ④ ~ ⑦ (생 략)	제43조(낙시진흥기본계획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u> <u>에 관한 사항</u> <u>6. (현행 제5호와 같음)</u>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 원 · 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 청장은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 낙시인과 낙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낙시문화의 <u>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의 발</u> <u>전을 위하여 낙시 및 낙시 관</u> <u>련 산업을 지원 · 육성하여야</u> <u>한다.</u> ② ~ ④ (생 략)	제45조(낙시 관련 산업 등의 지 원 · 육성) ① ----- ----- ----- ----- ----- <u>조성, 장애인의 낙시 참여 활성화</u> <u>및</u> ----- ----- -----. ② ~ ④ (현행과 같음)